



EU 통관환경의 주요 내용과 유의점

개편된 EU 신 관세법 (Union Customs Code: UCC)을 중심으로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장, 법학박사

2016년 5월부터 EU 신 관세법이 전면 발효하였다. 이 법은 기존의 관세법을 보다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정의하며 통관절차의 많은 부분을 전산화하고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EU 차원의 단일 통관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EU의 목표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법의 주요내용을 기존 관세법과 달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I . EU 신 관세법 (Union Customs Code: UCC)의 배경

EU 통관행정 관련 기본법은 1992년 제정된 Community Customs Code (CCC)^① 및 그 이행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인데, 지난 2008년에는 간편하고 전자화된 세관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Modernised Customs Code (MCC)^②를 제정 및 발효시켰으나 모든 회원국에 전산화를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그 시행일자를 준수하지 못하고 CCC가 계속 적용되어 왔다.

그러던 중, 2013년에는 그 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보류중이던 MCC를 폐지하고 EU 통관행정의 새로운 기본법이 될 Union Customs Code (UCC)라 불리는 신 관세법을 제정하였다.^③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UCC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④

- ❶ 관세법령과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
- ❷ 기업에 대하여 향상된 법적안정성 및 법적통일성을 제공하고 EU 역내의 모든 관세행정담당 공무원을 위하여 명확성을 제고함
- ❸ 통관규정 및 통관절차를 단순화하고 현재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다 효율적인 통관업무를 포함
- ❹ 완전 전자화되고 회원국 세관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통관행정 환경으로의 전환을 완성함

①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of 12 October 19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OJ L 302, 19.10.1992.

② Regulation (EC) No 450/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8 laying down the Community Customs Code (Modernised Customs Code). OJ L 145, 4.6.2008.

③ 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October 2013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 OJ L 269, 10.10.2013.

④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code/union_customs_code/ucc/introduction_en.htm.

⑤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5/2446 of 28 July 2015 supplementing 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detailed rules concerning certain provisions of the Union Customs Code. OJ L 343, 29.12.2015.

⑥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of 24 November 2015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implementing certain provisions of 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 OJ L 343, 29.12.2015.

⑦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341 of 17 December 2015 supplementing 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ransitional rules for certain provisions of the Union Customs Code where the relevant electronic systems are not yet operational and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15/244. OJ L 69, 15.3.2016.

- ⑤ 법령을 잘 준수하고 신뢰할 만한 사업자, 특히 종합인증 우수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를 위한 신속 통관절차를 강화함

한편, UCC는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에 위임입법 (Delegated Act: DA) 및 이행법 (Implementing Act: IA)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에 DA,^⑤ IA^⑥ 및 완전한 전자통관환경 구축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시까지 적용될 경과규정인 Transitional Delegated Act (TDA)^⑦를 제정하였다. 2016년에는 TDA와 관련하여 연도별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계획인 Work Programme^⑧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EU는 2020년 말까지 전자통관환경으로 완전히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UCC의 분야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부 집행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제정됨에 따라 UCC는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II. UCC의 주요내용

① EU 기준을 충족하여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통관상의 편의 확대

CCC는 종합인증 우수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게 보다 쉬운 세관신고, 보다 적은 세관통제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AEO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물건의 공급사슬이 안전하다는 믿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이러한 업체는 간편 통관절차를 이용하여 통관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서 나아가 UCC는 간편 통관에 관한 종합인증 우수업체 (AEO Customs Simplifications: AEOC) 지정을 받은 업체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① AEOC는 일반적인 세관신고 대신 자신의 장부에 관련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일종의 간편 세관신고방법인 Entry in Declarant's Records (EIDR)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⑤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6/578 of 11 April 2016 establishing the Work Programme relating to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the electronic systems provided for in the Union Customs Code. OJ L 99, 15.4.2016.

EIDR은 자신의 장부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1개월 이내에 보충신고를 제출하는 2단계로 구성되는 절차로서, 신고자는 상품에 관한 정보가 자신의 장부에 기재되었음을 세관에 전자통보해야 한다.

또한 AEOC는 감독권한을 보유한 세관의 요구시 상품 조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상품을 물리적으로 세관에 제시하지 않고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EIDR 세관신고절차를 이용하는 AEOC는 관세액을 스스로 평가 (Self-Assessment) 하는 것을 포함하여 세관업무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관세 납부의무 및 세관의 관세평가액 확인을 위한 정기적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한다. Self-Assessment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직 회원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 ③ 중앙집중식 통관 (Centralised Clearance)과 관련하여, 2020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이후 AEOC는 전자신고를 통해 수입자와 관계 없이 한 세관에서 통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관 시 관세 외에 부담해야 하는 국가별로 상이한 내국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부가세의 경우에는 세관신고지가 아니라 상품 수입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AEOC가 되기 위한 기준 중 업체의 능력에 관하여 새로운 조건이 도입되었고 현재의 기준 중 관세법령 준수에 관한 것을 일반 세금에 관하여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시 말하면, UCC 하에서 AEOC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관세법령 및 기타 세법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사내에 통관 문제를 담당하는 상당 수준의 전문인력을 운용 중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업체의 능력에 관한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는 현재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기존의 AEO 지정은 2019년 4월까지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재평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기존의 AEO 지정은 그 전까지 유효하며 별도로 AEO 재지정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② 관세평가 (Valuation) 규정의 변화

관세평가에 관하여 두드러지는 점은 기존 방식인 이른바 최초판매원칙 (First Sales Rule)이 최종판매원칙 (Last Sales Rule)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최초판매원칙에 의하면 수입자는 중개인이 생산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기초로 평가된 관세액을 납부할 수 있었으나, UCC는 상품이 EU 역내에서 자유유통을 위해 시장에 풀리기 직전 지불한 금액을 관세평가의 기초로 하는 최종판매원칙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칠수록 상품가격이 상승하므로 UCC의 적용으로 관세액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UCC IA가 발효된 2016년 1월 18일 이전에 체결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서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는 2017년 말까지 그 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에 의해, 그 때까지는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CCC하에서는 로열티와 라이선스로는 그것이 상품과 관련되어 있고 그 지급이 상품판매의 조건인 경우에만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었으나, UCC는 모든 로열티 및 라이선스를 관세평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더하여, UCC는 상품 수입시 관세평가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확보하지 못한 때에 관세행정당국이 특정 기준에 기초하여 관세평가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와 같이, 수입자가 간편 관세평가절차(Simplified Valuation Process)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할 추가요건을 정하고 있다.

③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의 변화

BTI란 업체가 EU 역내로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미리 관세당국으로부터 당해상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판단을 받는 절차이다. 업체는 BTI를 통해 수입하려는 상품의 정확한 품목을 확인함으로써 납부해야 할 관세액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BTI 제도는 심사청구를 받은 EU 역내의 관세행정기관이 당해상품에 적절한 세번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판단결과는 역내의 다른 모든 관세행정기관을 구속한다. BTI를 통해 세번이 확인된 상품에 대하여는 장차 EU 역내의 어느 지역에서 수입 통관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같은 품목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BTI는 통관행정의 법적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CCC 하에서는 BTI가 관세행정기관만을 구속하고 있었으므로, BTI 품목분류에서 높은 관세율의 상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체가 세관신고와 통관절차시 BTI와 다른 세번을 적용하기 쉬웠다. 그러나 UCC 하에서는 수입업체가 수입신고시 BTI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기존에 확인된 BTI를 포함한 모든 BTI는 EU 역내의 관세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들도 구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BTI의 유효기간이 교부 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것도 UCC로 인한 변화이다.

④ 상품 품목분류 (Classification of Goods)의 통일성 강화

UCC는 회원국들 사이에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의 품목분류방식이 다른 경우, 그 회원국

들의 전문가와 EU 집행위원회가 참여하는 EU차원의 특별위원회 (Tariff and Statistical Nomenclature Committee)에서 단일 세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다 신속한 토의를 위해 엄격한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앞으로는 EU차원의 통일된 개별상품 품목분류가 신속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원산지규정 (Origin Rules)의 변화

FTA나 GSP 등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구제조치의 면제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모든 상품은 EU 역내로 수입될 때 그것이 이러한 특혜가 적용되는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의 상품인지, 아니면 특혜가 적용되지 않는 원산지 (non-preferential origin)의 상품인지에 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특혜가 적용되는 원산지에 관한 CCC의 규정들은 2012년에 이미 개정되었으므로 UCC에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17년부터는 특혜대우를 요청하기 위해 특정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대신 상품수출자 자신의 확인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반면, 이러한 특혜가 적용되지 않는 원산지에 관한 CCC의 규정들은 UCC에서 상당히 변경되었다.

즉, CCC에서 특혜가 적용되지 않는 원산지란 “당해상품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last), 상당하고 (substantial),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economically justified) 공정 또는 작업 (processing or working)이 이루어진 곳”을 의미하였는데, 이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서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발생시켜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CC는 WTO 원산지규정협약에 따라 설립, 가동된 원산지조화프로그램 (Harmonized Working Programme) 아래서 제정된 List Rules를 일부 수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원산지판정기준을 마련하였다.

⑥ 통관보증 (Guarantees) 확대적용

CCC에서는 EU 회원국에게 통관보증 요구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UCC에서는 모든 통관절차에서 현존 또는 잠재적 관세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통관보증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수출입업체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나, AEO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다수의 통관활동에 대해 적용되는 포괄보증 (Comprehensive Guarantee)을 제공하거나, 포괄보증 제공시 인정되는 보증금 감면 (Waiver

or Reduction of Guarantee)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경과규정으로서 역내가공 (Inward Processing), 보세창고 (Customs Warehousing), 장치 (Temporary Storage) 등 UCC 발효 전 보증이 요구되지 않던 경우는 장치 UCC에 의한 승인 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보증 없이 계속 운용할 수 있다.

⑦ 보다 유연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특별통관절차 (Special Procedures)

UCC는 기존의 다양한 특별통관절차를 통과운송 (Transit: 역내 및 역외), 보관 (Storage: 보세창고 및 통관절차가 없는 free zones), 특정사용 (Specific Use: Temporary Admission and End Use), 가공 (Processing: 역내 및 역외가공)의 네 가지 절차로 재편하여 단순화함으로써 업체가 적절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관과 관련한 몇 가지 절차의 적용이 유연해졌는데, 그 주요한 것으로는 관세납부를 유예하는 절차에 대한 승인기간이 연장되었고, 보세창고에서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가 허용되었으며, 역내가공을 위한 상품 수입시 관세납부가 유예되기 위하여 필요한 역내가공상품 재수출요건이 폐지되었고, 역내가공상품이 EU 역내로 유통되기 위해 통관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이자 (Compensatory Interest)가 폐지된 것 등이 있다.

Ⅲ. 우리 기업이 유의할 점

지금까지 금년 5월부터 발효한 UCC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EU 통관 환경에 우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한다. 먼저, UCC로 인해 변경된 사항들은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EU는 관세동맹으로서 EU 차원의 관세행정 통일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고 UCC의 제정도 이러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EU는 아직 완전한 단일 관세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별 국가별로 다른 통관제도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EU차원의 강력한 중앙 관세행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회원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UCC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관세당국별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회원국에 규정의 해석 및 집행에 관한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회원국별로 통관행정문화가 서로 다른 점도 문제이다.



이에 더하여 UCC는 통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각 회원국에게 맡기고 있으므로 같은 위반에 대하여도 통관지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EU 회원국 별 관세행정 실무상의 미세한 차이점을 숙지하는 것도 EU 관세행정이 완전히 통합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AEO, 업체등록식별시스템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EORI) 등의 전자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EU는 전자기술에 기반한 역내 통관행정의 전면적 통합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많은 우리 기업들은 이미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EU가 추진하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잘 적응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완전히 통합되기까지는 EU 차원, 개별국 차원의 규제가 섞여 있어 사안별로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20년 말까지 전자통관환경으로 완전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전자통관시스템의 개발은 각 회원국이 자국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수출입업체들은 서로 다른 다수의 전자통관시스템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UCC하에서 확대된 간편 통관절차 및 보증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AEOC로 지정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우리 기업들도 EU 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두고 있다면 AEOC가 되는 것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 이 경우 AEOC가 되려면 내부적으로 준법정책 강화 및 통관전문인력 운용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EU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사 내에 구축해야 할 것이다.